

의안 번호	1853	【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21. 12. 3.(금)
- 나. 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12. 3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12. 14.(화)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2. 1. 13. 시행)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일부 개정(2022. 1. 13. 시행)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적용범위(안 제1조 ~ 제3조)
- 나. 기본원칙(안 제4조)
- 다. 지원신청, 범위, 지원 기준 및 절차, 지원방법(안 제5조 ~ 제8조)
- 라.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(안 제9조)
- 마.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(안 제10조)
- 바. 운영규정(안 제11조)

4. 근거법규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및 동법 시행령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5. 검토의견

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.